

아틀리에 933'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안내문

■ 주택형별 공급세대

구분		74A	합계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기관 추천	장애인	부산광역시 4	7	필요없음
	중소기업근로자	3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특별공급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상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장애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정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3.12.04)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확인서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갤러리 청약 방문접수 시 제출)

구분	대상	해당서류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 서류	청약자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추가 서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리인 접수 시	청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내용은 청약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청약신청은 본인이 직접 관계법령 및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배포자료는 작입 및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